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개토론회(2011. 4. 13)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체감도를 높일 복지서비스 이용기반 마련

강 혜 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목 차

- 1 논의의 배경
- **2** 복지 전달체계의 특성 및 변화 동향
- 3 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 4 여건 변화와 전달체계 개선의 기본방향
- 5 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 1. 논의의 배경

- 국민들이 다양한 복지정책을 체감하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
  -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대상자를 정하고 급여를 지급,
    -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복지수요자, 지원할 자원을 파악하고 연계,
    - 이 과정에서 수요자나 업무담당자가 편리하고 신속하게, 수요자에 게는 충분한 정보와 서비스 접근의 가능성을 높이고,
    - 업무담당자는 책임성에 기반한 투명한 행정과
    - 수요자별 특성을 고려,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여건을 필요로 함



# 1. 논의의 배경

- "국민의 복지체감도가 높지 않다. 이는 전달체계에 기인한 문제다"
  - 이는 오롯이 전달체계로 인한 것으로 단언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전달체계로 개선 가능한 문제들이 있으며,
  - 이는 재정·인적자원의 관리 및 효율적 활용,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명확하게 기여할 수 있는 사안들이 포함
- 본 고에서는 누적되어 온 전달체계 부문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점검, 시의성이 높은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



### 2. 전달체계 특성 및 변화 동향

#### •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범위

- 공공부조가 복지제도의 핵심이었던 2000년대 전반까지, 공공부조(현금급여 중심)를 비롯한 사회복지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 지자체(시도-시군구-읍면동) 복지부서가 핵심 전달체계로 인식
  - 공공부문에서 담당할 서비스제도 기획, 수요·공급 관리는 취약 한 실정
  -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책이 미흡한 가운데, '종합사회복지관'등 복지 서비스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기능 유지
- 전달체계 개편 정책에서도 주로 '공공 전달체계'에 초점



### 2. 전달체계 특성 및 변화 동향

#### • '전달체계'에 대한 인식 전환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은 시군구(읍면동)을 중심으로, 중앙의 정책 집행이 원활하도록 하는 수직적 전달체계의 측면에 집중
  - 최근에는 복지사업의 분야, 급여유형, 복지수요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지방화·분권화를 배경으로 시군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가 복지사업의 주체로 부각, 수평적차원의 전달체계에 관심 증대
  - 이전에는 중앙에서 설계된 정책, 급여가 그대로 대상자에게 원활하게 전달되는 과정에 주로 가치를 둔 반면,
  - 이제는 다양하고 개별적인(individualized)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서비스를 설계 하고, 적합한 자원을 동원 하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 지 지속적으로 책임관리 하는 방안, 이를 위하여 여러 유관 공공, 민간기관 들이 협력하는 방안에 대한 중요성 부각



### 2. 전달체계의 특성 및 변화 동향

- 이를 위해서는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 각각의 조직,
   인력, 협력 기제, 규율의 변화가 필요하며, 재정(분담방식, 이전 방식, 규모 등), 서비스·사업방식의 변화도 수반되어야 함.
  - 전달체계의 개선은 다수의 이해관계자, 조직, 문화와 인식, 재정, 제도의 문제가 결부된 문제로서 늘 복잡하고 어려우며, 전달체계가 담아내는 제도와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 전달체계의 개선이 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되는 수행수준과의 격차(gap)는 점차 확대
  - 공공부조는 그 틀이 정착되어 크게 바뀌지 않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화가 대폭 추진되어, 현금급여 지급을 통한 생계보장, 욕구의 단순 충족 차원을 넘어, 자활, 자립, 지속적 보호, 돌봄 등에 대한 다 차원적인 서비스 방식의 접근 요구



# 2. 전달체계의 특성 및 변화 동향

#### <표 1> 공공 복지행정의 주요 역할 변화

공공 사회복지부문의 전통적 역할	새롭게 강화되어야 할 역할
<ul> <li>중앙정부가 설계한 제도 집행에 충실</li> <li>사업별 지침의 준수 기준</li> <li>현금급여 중심 관리 행정</li> <li>급여지급을 위한 대상자 선정에 치중</li> <li>재정관리 차원의 사후관리/확인조사수행</li> </ul>	• 정형화된 대응이 곤란한 사회복지서비스 요구 확대  - 욕구 파악 및 서비스지원을 위한 상담, 자원 발굴·연계에 집중할 재량적 업 무 수행 환경  - 수요자 중심으로, 전반적 지원과정의 책임성을 높일 '사례관리' 방식 대응
• 국고보조사업 중심의 지방재정 매칭에 한정	• 복지 지원을 위한 자원 확대, 관리에 관심
• 정책 대상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책임 불명확	·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2~8)에 근거한, 지자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강화
•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 위탁 수행 중심	• 민간 및 유관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 제공 필요



- '정책의 기획-제도설계-집행기관-급여·서비스 전달' 구조 및 과정상의 문제
  - 복지정책 영역별 소관 부처 및 집행기관
    - 교육과학부, 고용노동부, 보훈처 등 13개 부처 총 292개(복지부 2011년 업무보고 자료) 복지사업 실시
    - 주요 복지급여 유형별 집행기관은, 각 제도간에 유기적인 연계를 갖기 어려운 분산적인 운영구조

7 8		현금급여		서비스					
구 분	공공부조	연금	실업급여	노인	장애인	아동	고용지원		
지자체	•			•	•	•	•		
공단		•		•	•				
특별행정기관			•				•		



#### • 이용자의 복지체감도 관련 문제

- 복지체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 전달체계의 문제점 파악에 있어, 가장 의미가 있는 부분
  - 급여·서비스 내용 및 수준이 결정적일 수 있으며, (전달체계에 서 고민하는) 자원 확충의 문제와 밀접
  - 정보접근, 신속성(대응성), 처리절차, 접근성(물리적, 심리적), 서비스제공 인력의 전문성·태도의 문제와도 깊이 관련
- 복지급여·서비스관련 정보 및 접근성 관련
  - 어디에서 도움 받을수 있을지 모른다, gateway가 명확지 않다
  - Web기반 접근경로가 취약하고, 취약계층의 이용은 용이하지 않다



- 복지급여·서비스의 충분성 및 지속성 관련
  - 긴급한 상황(위기가정, 긴급의료지원 등...)에서 필요한 지원이 충분치 않다
  - 이용한 서비스(급여)로는 문제 해결, 수요 충족이 어렵다
  - 실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없다
- 서비스 제공 환경 관련
  - 읍면동사무소에 가도 충분하고 편안한 상담이 안된다
  - 담당자가 서비스·제도 관련 정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
  - 서비스 신청을 위해 일일이 찾아다녀야 한다
  - 서비스·급여지급 속도(responsiveness)가 늦다



#### • 복지행정 및 서비스제공 여건

- 확대되는 서비스 수요에 대한 공적 대응 취약
  - 서비스 기획, 수요자 욕구사정, 민간 협력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여건 취약
  - 현금급여/자산조사 중심의 업무 우선, 서비스관련 욕구파악, 서비스연계 미흡
- 지자체 복지담당 인력 부족
  - 읍면동 복지직의 가구방문등 서비스 수행 곤란
- 확대된 서비스사업에 대한 **기획력, 수행체계** 부재
  - 시군구단위 사업 기획의 필요성은 높아가나, 재정력·기획 경험의 부재로 중앙정부 정책변화에 조응 난항
- 유관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협력업무" 취약
  - 고용지원기관, 보건소, 민간복지기관 등과의 구속력을 가진(재 정이 결합되거나 규제가 따르는) 업무협력 곤란



### • 지자체 복지인력 현황

- 총 22,461명('10.6월)
  - 사회복지직 10,335명, 시군구당 19.3명, 읍면동당 1.6명 배치
    - 시도 2.9%, 시군구 43.0%, 읍면동 54.1%
    - 여성인력 75.5%, 7급 이하 하위직 88.7%
  - 행정직 12,126명

#### <표 2> 지자체 사회복지담당인력 현황

7 1	-11	u ter		<b>읍면동</b> (3,464)					
구 분	계	시도	시군구	소계	읍(214)	면(1,192)	동(2,058)		
계	22,461	1,535	10,609	10,317	877	3,255	6,185		
사회복지직렬	<b> 렬</b> 10,335 296		4,440	5,599	510	1,613	3,476		
행정직 등	12,126	1,239	6,169	4,718	367	1,642	2,709		



- 인력 부족,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충실한 복지서비스 제공 애로
  - 복지예산 및 사업 증가에 복지직의 확충이 뒷받침되지 못한 실정



자료: 보건복지부, 2011. 3



- 출산휴가·육아휴직(549명)으로 업무공백이 크고, 결원 충원도 미흡
  - 시도 단위 대체인력 뱅크를 운영중이나, 일용직 채용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 책임성 등 문제로 활용 저조
  - 기타 결원 발생시 지자체는 행정직을 우선 충원하는 경향
-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읍면동의 인력 부족 심각
  - 전체 읍면동의 60% 이상이 복지직 1명 이하 배치
  - '방문상담·찾아가는서비스' 수행 비율은 동 8.0%, 읍면 9.3%

#### <표 3>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업무 실태

	민원 상담	급여 신청관련 업무	방문 상담· 찾아가는 서비스		지역복지자원 조사 및 관리	자활지원 업무	본청 위임 업무	사업별 복지업무	지자체 자체 복지업무	기타 행정 업무	기타	전체
동	24.7	14.2	8.0	6.3	3.6	3.9	7.8	13.3	5.7	8.6	3.7	100.0
읍면	22.4	14.0	9.3	5.1	3.8	3.7	7.4	14.6	5.7	10.5	3.6	100.0



#### • 최근 전달체계 개선 정책 동향

- '09년 6월「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총리실 주관) 발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복지사업 중복 조정등 개선 추진
- 지자체 복지업무 지원시스템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운영으로, 급여행정의 통합적 수행을 통한 업무효율화 기반 마련
  - 15개 주요 복지급여사업의 업무수행 절차를 통합적으로 개편, 자산조사 항목을 통일 표준화, 1번의 조사로 해결, 행정 효율화 기대
  - 자산조사에 필요한 공적자료의 전산연계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조사의 정확성·공정성을 높여, 시스템 기반의 자산확인 의존도 향상
  - 복지담당공무원의 자산조사 집중을 해소, 전문직의 업무 수행이 요청되는 복지상담, 서비스연계, 사례관리 등을 수행할 여력을 확보
  - 그동안 매우 미진했던 급여변동 관리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



- 사통망을 중심으로 타부처, 지자체, 민간복지자원까지 단계적으로 연계 (행안부등 관계부처 협력), 중앙부처 복지급여, 서비스 자격·이력정보 통합관리 추진중(복지부 2010 연두업무보고)
  - '10년 4개 부처 112개 사업, '11년 자격관리는 11개 부처 149개, 이력관리는 13개 부처 292개 사업으로 확대
- 그러나, 서비스 이용과정의 편의와 체감도 개선은 아직 미흡한 실정, 다양한 복지 급여·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이 적시에, 편리하게 이용하고, 정책대상자에 대한 책임있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달체계를 업그레이드 할 필요
  - 주요 복지문제 영역에 대한 통합적, 체계적 서비스 기반 마련
  - 복지 행정기관, 민간서비스기관간 유기적, 공식적 협력 체계 구축
  - 복지서비스의 누락 및 사각을 해소하되, 공공의 책임성과 자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성, 주도성을 높일 지원체계 구축



#### 가. 복지 수급환경의 변화

- 지난 10년간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공공부조 중심에서 사회복지서비 스의 대폭 확대로 전환
- 효율, 경쟁, 자율, 민간을 중시하는 경제·사회의 운영원리가 사회복 지부문에도 확산
  - 정부주도의 사회복지 공급구도 변화
    -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확대, 서비스 영역의 시장화 추구 정책
  - 지방화의 배경 속에서, 중앙정부-지자체의 역할, 권한 조정 모색
    - 지방 주도의 복지계획 수립 추진
    - 복지재정의 지방이양
    - 평가체계의 전환



- 시스템 기반의 행정 효율화 추구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
  - 근로연계 복지의 강화
  - 성과기반의 복지 운영 확대, 책임성 입증의 요구
- 거버넌스(governance)의 요구
  - 사회적 합의의 기반 마련
  - 복지 수요자, 공급・생산자간의 경계 모호
- 이용자중심(user-centered) 서비스
  - 전문화, 제도의 다양화는 분산, 분절 현상을 동반,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체계의 필요성 증대



#### 나. 정책 개선 방향 및 전달체계의 기본 요건

-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과 민간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복지 전 달체계는 중앙, 지방, 공공, 민간 각 영역과 영역간 관계 함께 고려
  - 그러나 시군구를 권역으로 복지예산의 수립·지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각종 제도·사업의 집행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지방 & 공공" 전달체계의 정비는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정책과제
    - 특히, 급여행정·자산조사에 치중했던 사회복지직의 업무를 **서비스중** 심으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사례관리 시스템 마련할 필요
    - 공공정책의 책임범위가 확대되면서, 단일한 공공부조제도는 다원적인 공공급여제도로, 일부 취약계층이 수혜받던 서비스는 보편적 이용을 지향하는 제도로 확산되면서, **부문간 협력이 필요한 서비스**(고용과 복지, 보건과 복지, 교육과 복지 등)의 수요 확대



- 조직 재구조화, 인력의 조정, 업무 수행방식의 변화, 지원 시스템의 변화 병행
  - 조직 재구조화: 업무분담 재설계, 조직 통합 및 신설
  - 인력: 재배치, 증원, 훈련, 사기진작
  - 업무수행 방식의 변화: 연계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 기반 마련(사례관리담당기구 설치, 민간협력기반 위탁)
  - 지원시스템 향상: 정보시스템 고도화, 인력의 교육체계 선진화



#### [복지 전달체계 개선의 주요 목적 및 요건]

- •지역중심의 체계적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 복지급여(현금) 관리 체계 효율화
- 복지수요 및 자원 관리의 공적 책임성 강화

#### 이용자 관점 반영

-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 충분한 설명
-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적절한 지원(급여·서비스)
- 필요한 시점에, 가급적 신속히 지원
- 가능한 멀리 이동하지 않고 여러번 만나지 않고 접촉
- 친절하고, 존중받고, 의지된다는 느낌의 대우

#### 업무수행 여건

-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 분장
- 적정한 업무량과 명확한 업무분담 구조
- •정보, 전산시스템의 편리한 지원
- 업무관련자, 부서간 원활한 소통
- ·정체성이 확인되고, 자기개발이 가능한 환경

#### 정책·자원 관리

- 투입대비 효과가 큰 집행구조: 중복누수 최소화
- 전국적으로 형평성있는 제도 집행이 가능한 구조
- 지자체별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복지사업 기획
- 민간자원이 충분히 공원 참여하여 상승효과를 내는 자원 관리



### 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읍면동)의 서비스 기능 강화

#### • 지자체 복지행정 기반 혁신

- 대상자발굴, 자산조사에 집중하던 복지행정에서, 다양한 복지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연계지원, 사례관리 방식의 서비스업무 강화
  - 현금 급여: 저소득가구의 기초생활을 위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공공 급여 지원
  - 복지서비스(human service) 지원: 노인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자립생활 지원, 아동 보육·방과후활동, 건강한발달 지원, 다문화가 정 지원 등
  - 고용 연계, 자립 지원: 근로능력·의지가 있는 빈곤층의 자활 및 고용 지원 등



#### 1) 시군구 '사례관리 전담기구'의 운영

#### • 설치 목적

- 지역사회단위 통합적 서비스 이용 여건 조성
- 서비스 조정기능 강화, 민간 서비스기관과의 협력 체계 마련
- 공공의 책임 관리 강화

#### • 기본 설계

- 시군구 본청 내 팀의 형태로 '사례관리 전담조직' 신설
  - 가급적 시군구 내 "권역별 관리"가 가능하도록 인력 배치, 활용
- 위기가구 사례관리, 드림스타트사업, 건강가정지원사업, 자활사례관리 사업과의 협력, 조정 방안 마련



#### • 주요 기능

- '집중적·장기적 보호·지원'이 필요한 서비스 대상자 발굴, 문제 및 욕구 사정, 서비스계획 수립, 서비스연계지원의 지속적 관리
-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 활용 기반 마련

#### • 인력

- 사회복지직 및 통합서비스 전문요원(현원 + 신규채용) 활용
  - 사회복지직이 사례관리 전반의 기획, 조정, 수퍼비전 등을 담당할수 있도록 역할 강화
  - 정신보건, 직업상담, 가족상담 등 관련 전문직 채용 필요
- 팀장은 사례관리에 대한 수퍼비전이 가능한 사회복지직 배치



#### 강점

#### • 다양한 정부 사례관리사업의 수행 거점, 통합성 제고 가능

- 종합사회복지관등 민간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기능 활성화 지 원 가능
  - 사례관리사업에 대한 '비용', 예 산 마련 필요

#### 약 점

- 복지행정관련 방문은 읍면동 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서비스 인력 근무 거점으로 활용
- 읍면동 사회복지직과의 유기 적 협조 및 역할 분담이 관건
- 민원인의 초기상담창구로서 기능 강화를 위해 읍면동에도 동시 복지담당인력 확충 필요



#### 광역-기초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사례관리기반을 마련한 사례

- 시·군의 통합사례관리 체계로서무한돌봄센터(1개) 및 권역별 네트워크팀(약 4개) 설치
- '10년부터 단계적으로 신설·확대중이며, '11년 운영예산 105억(도비 45억 시비 60억)
- 공무원과 민간계약직(2~3명) 채용으로 운영



#### 2) 광역 동단위 '종합복지센터' 운영

#### • 설치 목적

- 지역사회단위 통합적 서비스 이용 여건 조성
- 공공의 책임 관리 강화
- 행정 효율화 및 복지업무의 전문화 동시 달성

#### • 기본 설계

- 복지담당 일선사무소를 재구성하는 방안, 거점 동을 중심으로 관할 인구 5만~10만 범위 동에 복지 전담 센터 설치
  - 읍면지역의 경우, 접근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방안 검토 필요
- 시·군·구는 기획·관리업무, 일선사무소는 대면서비스업무로 재편
- 일선사무소는 약 800개(현행 동의 1/3)~400개(1/5)로 설치되는 경우,
   1개 일선사무소에 추가 인력 확보 최소화 가능
- 향후 고용센터와의 결합 체계 고려



#### • 주요 기능

- 현행 읍면동의 전체 사회복지업무 수행
- 이와 함께 사례관리사업을 복지직 중심으로 수행(보건, 고용부문과의 연계 서비스 강화)

#### • 인력

- 읍면동 복지담당인력(복지직 및 행정직) 모두 배치하고 신규 증 원인력 산정
  - 통합서비스 전문요원(현 928명+ 신규채용)도 활용
  - (향후) 정신보건, 직업상담, 가족상담 등 관련 전문직 채용 필요
- 센터장은 사회복지직으로, 사례관리 담당 팀장도 수퍼비전이 가능한 사회복지직으로 배치



#### 강점

- 복지행정 및 서비스 관련 원스톱 처리 가능
- 업무분담이 가능한 인력규모 확보, 규모의 경제 실현
- 사례관리사업들의 수행거점으로 서 통합성 제고, 사업 활성화 가능
- 향후 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 원 구조와의 결합, 사회서비스일 자리 지원 등 용이, "종합 고용-복 지센터" 등의 홍보를 통해 실질적 인 변화, 체감 효과 증대

#### 약 점

- 읍면동 일반민원 행정과의 분리로, 이용자 초기 혼란 우려
- 공공 주도 사례관리와 민간 사례 관리사업과의 의뢰 혹은 협력 구 도 설정 과제



#### 3) 지자체 사회복지인력 증원

- 읍면동 사회복지직이 내방상담을 충실히 수행하고, 찾 아가는서비스를 통한 복지수요자의 변화 파악 및 다각 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인력 증원 필요
  - 요청되는 사례관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요원(민간계약직)이 실제 사례관리를 수행하더라도, 이를 지도·감독하고, 전체 사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다수의 공무원 배치가 필수적
    - 현재 월평균 사례관리 수행 건수는 기초적인 필요가구(기초수급가 구의 약 10%)의 15% 수준에 불과(보사연, 2011년 1월 조사)
      - 사례관리담당인력 시군구당 평균 2명, 1인 월평균 22건 수행 (총1만여건)



- 복지담당인력의 업무특성을 감안한 인력제도 운영
  - 복지업무담당의 상대적 불이익을 방지할 다양한 제도적 장치
    - 전문적 사회복지업무 수행 부서의 보직 배치 확대 및 승진기회의 상대적 불이익 경감
      - '복지직은 행정직에 비해 승진소요 연수가 오래 걸리고, 상위 직위 부족으로 승진시 보임기회에 있어 제한적'
      - '복지현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마인드를 가진 관리자 (읍면동장)의 배치 필요'
  - 일반행정직의 복지담당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 전보기간 제한, 복지업무 담당시 승진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 일반직이 수행가능한 명확한 업무분장, 간략 매뉴얼, 상시 학습이 가능한 동영상 제작 배포 등



### 나.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의 복지정책 조정 기능 강화

-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전부처의 사업 통합 관리
  - 각 부처의 유사·중복 복지사업의 통합 및 조정, 신규 복지서비스 사전 타당성 검토 의무화, 총리훈령 제정 또는 법률(사회보장기 본법 등) 개정 추진(보건복지부, 2011년 연두업무 보고)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활용 자산조사, 지원대상 선정이 이루어지는 사업과 관련, 정책목표·범위, 자산조사 방식·선정기준, 급여·서비스수준, 전달체계, 재원, 시행시기, 추가 복지전문인력 소요 등에 관하여 정책 설계·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 후 조정, 대안 마련



#### • 광역지자체의 복지정책 기획 및 조정 기능 강화

-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보다 강화. 시군구간 복지수준 및 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단체와 협력, 지원
- 해당 권역 특성에 맞는 광역지자체의 정책방향을 수립, 지자체의 복지계획과 조율하며, 시군구의 복지계획 시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피드백하여 성과기반의 평가, 재정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 검토



#### 다.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내실화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연계범위를 중앙부처· 지자체·민간복지자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부처간 복지정보 연계'를 통해 모든 부처의 복지급여, 복지서비 스의 자격 및 이력정보에 대한 통합관리 추진
    - \* 1단계 개통('11년, 현금성 사업) → 2단계 개통('12년, 비현금성사업, 바우처사업 등)
  - 지자체 개별 복지서비스(63종)에 대해 통합관리
  - 민간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 연계→ 주요 민간 나눔기관까지 연계 확대 검토



- 주요 복지급여·복지서비스에 대한 On-Line 신청시스템 구축
  -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신청하고 처리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On-Line 서비스 제공
    - \*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사이트 개통
      - → 온라인상 신청
      - → 관할 읍면동에서 자격정보 확인 후 해당 서비스 제공
  - 복지·고용 중 추진 가능한 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5. 복지 전달체계 개선 과제

### 라. 복지-고용 연계지원체계 강화

- 지역사회단위 서비스 집행기관에서 취업취약계층, 근로빈곤층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 자활을 적극 지원하는 복지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강한 결합 필요
  - 세계적 추세로서, 관련 공공행정기관(전달체계)의 통합 시도 확산예) 영국 JobcentrePlus, 호주 Centrelink, 뉴질랜드 Community Link 등
  - 지자체 복지 행정, 지자체 일자리지원 행정, 노동부 고용센터와의 연계방안 마련
- 향후 중앙부처의 결합도 고려



www.kli.re.kr 일을 통한 복지



**박 찬 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1. 일을 통한 복지의 개념

- 2. 한국의 노동시장
- 3. 취업자 보호제도 현황
  - 4. 발전방향

- 복지: 福祉, well-being
- 사회정책으로서의 복지정책:
   사회 구성원을 안녕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국가의 시장 외적인 개입정책
- 일을 통한 복지: 일을 통해서 안녕한 상태가 되는 것
- 전제조건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를 통해서 적절한 소득 보장이 가능 - 일자리를 통해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이 가능
- 가능한 정도는 그 사회의 노동시장의 특성과 일자리의 특성에 따라 다름

#### 1. 일을 통한 복지의 개념

- 일을 통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 사전적 개입: 노동시장의 성격이나 특성을 형성하는 정책 불공정 노동계약·임금체불 금지 등 노동관계법 최저임금제도, 퇴직금 - 사회보험 적용 강제 등
  - 사후적 개입: 근로장려세제
  - 그 외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취업알선, 직업훈련, 일자리 창출 등)

• 일을 통한 복지의 대상

근로능력자 & 노동시장에서 지위가 낮은 사람 소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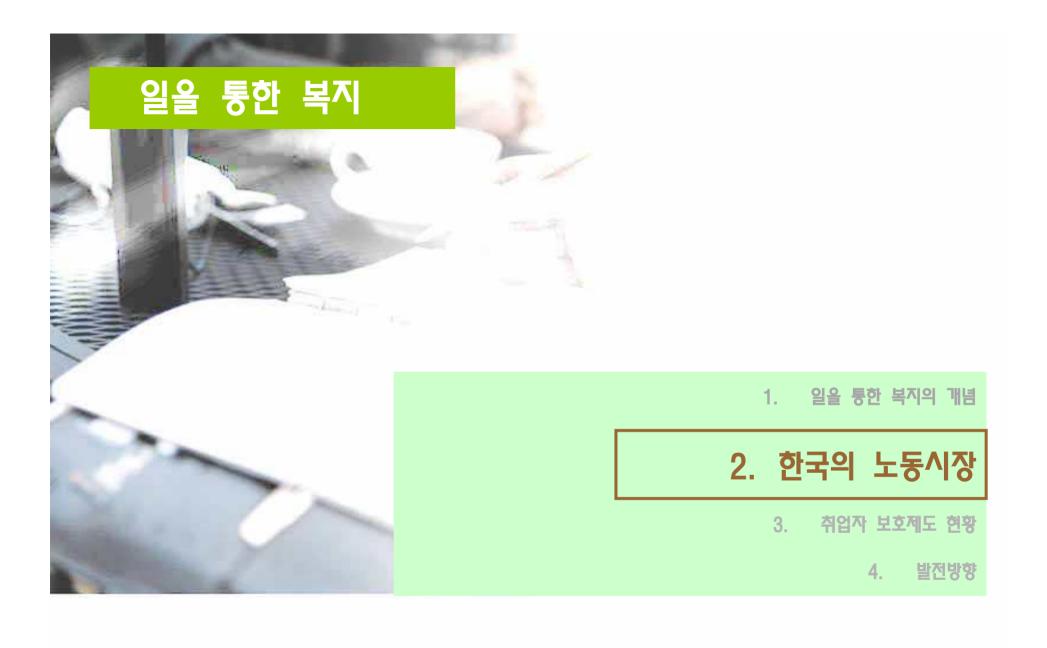
- 비수급 근로능력자
- 근로능력이 있는 비수급 빈곤충
-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층
- 근로능력이 있는 차차상위층

• 일을 통한 복지의 목적 및 사업내용

목적	사업내용
일하고 싶은 취약계층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직업알선, 직업훈련, 보육·간병 등 사회서비스 제공,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제공
일을 하면 일정수준 이상의 생계 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비공식부문의 공식화,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정부정책의 포괄범위 확대, 시장규칙의 재정립을 통한 저임해소, 근로장려세제, 재형저축 확대 등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빈곤층 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	사회보험 사각지대 최소화, 긴급구호제도 활성화, 실업부조제도의 도입 등

• 일을 통한 복지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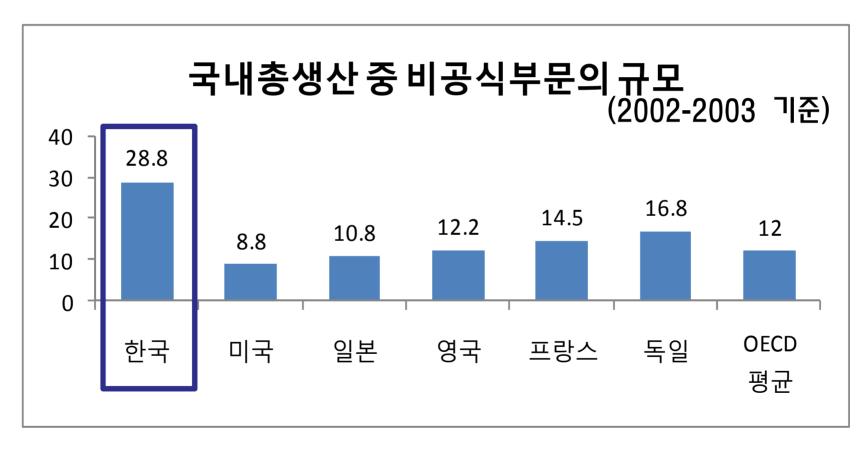
- 1. 현대사회의 중심가치인 자립을 실현함으로써 개인의 자긍심 고양
- 2. 국가부담 감소: 고령사회에서 보다 많은 사람이 일을 하도록 하여 부양비 감소



### ■ 취업자의 일자리 분류

-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고자 하는 복지제도를 도입
- 사회보험 중심의 비스마르크식 복지체제는 시민 대부분이 임금근로자로 일 한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대량생산 체제에 적합한 복지체제임. 오늘날 이러한 가정이 흔들리고 있음.
- 한국사회는 비공식 부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 기존 보호틀에 적 합하지 않은 일자리가 특히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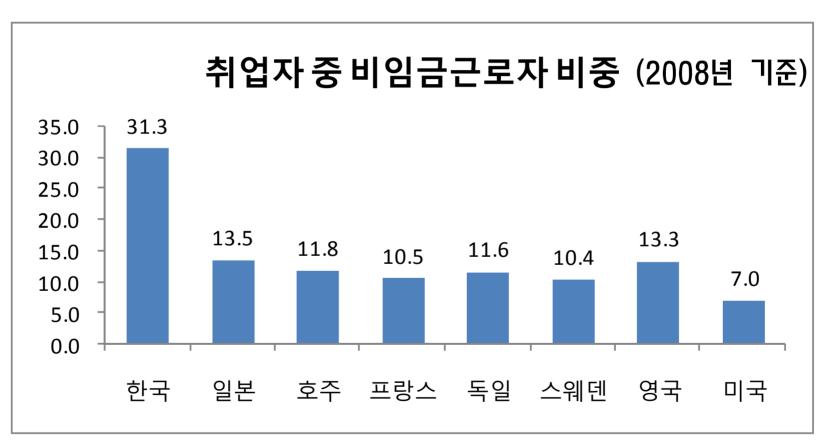
• 비공식 부문의 규모가 매우 큼.



출처: IMF 보고서, 김주영 외(2009). "한국의 임금격차"에서 재인용



• 자영업자의 규모가 매우 큼.



한국노동연구원(2010). KLI 해외노동통계.



•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특수형태 고용에 가까운 사람이 다수임.

형태	규모
보험설계	7.3만
방판 - 외판	32.2만
다단계 판매	90.2만
기타 모집수당	53.9만
간병인	4.8만
대리운전	2.1만
행사도우미	9.4만
물품배달	2.2만
학원 강사	30.8만

출처: 국세청(2010). 국세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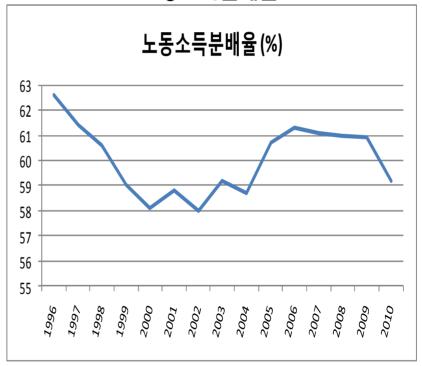


#### 2. 한국의 노동시장과 근로자 지원제도 현황

- 시장에서 일을 통한 분배구조의 현황
- 경제성장의 분배가 근로자에게 덜 오고 있음.

경제주체별 소득증가율(국가, 기업, 가계)

노동소득분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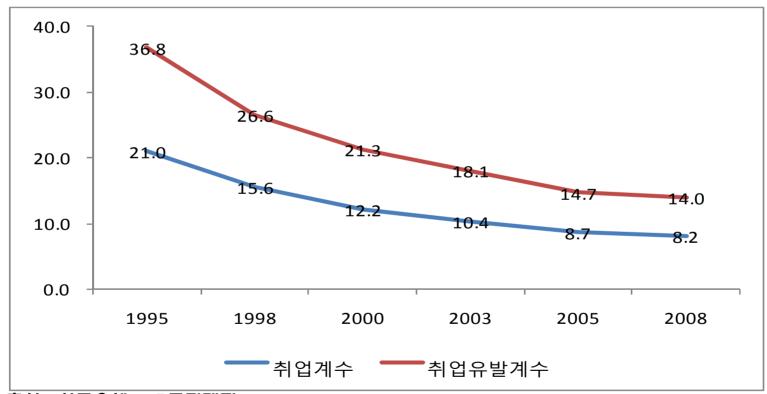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 재계산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외환위기의 영향을 받은 90년대 일부 시기는 계산에서 제외하였음.

#### 2. 한국의 노동시장과 근로자 지원제도 현황

- 경제성장이 곧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음.
- 취업계수, 취업유발계수의 지속적 하락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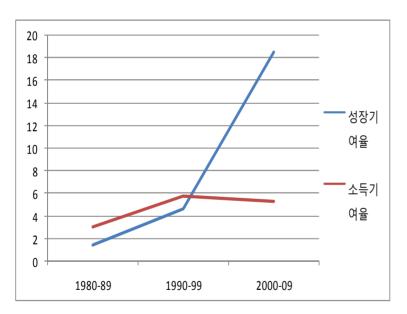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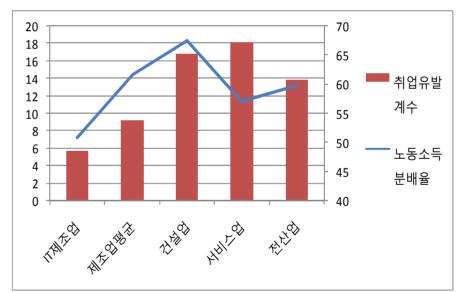
#### 2. 한국의 노동시장과 근로자 지원제도 현황

### •주력산업의 변화와 소득분배 및 고용의 하락

- 1970년대: 섬유의복, 1980년대: 1차 금속, 1990년대: 석유화학, 200년대: IT 제조업(반도체)

### •IT산업이 GDP 성장에 미친 기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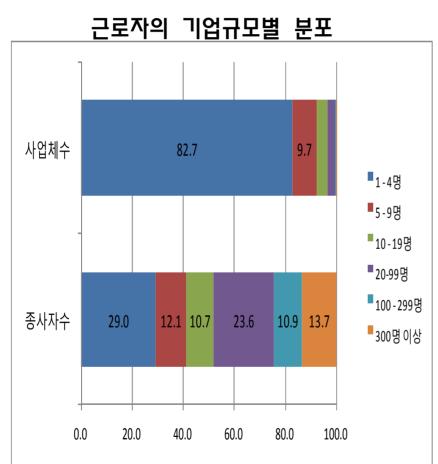
출처: 한국은행(2010). IT중심 성장과 정책과제.

### 성장-고용-소득간 선순환 관계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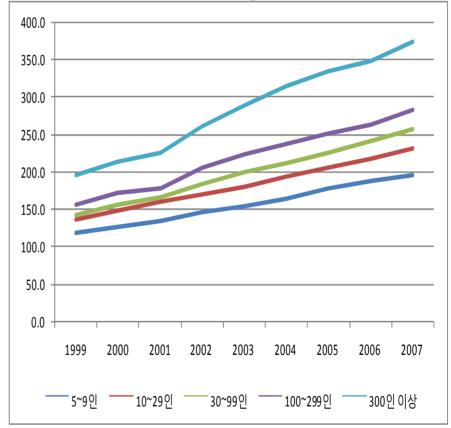
#### 2. 한국의 노동시장과 근로자 지원제도 현황

### ■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심화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기업규모별 임금총액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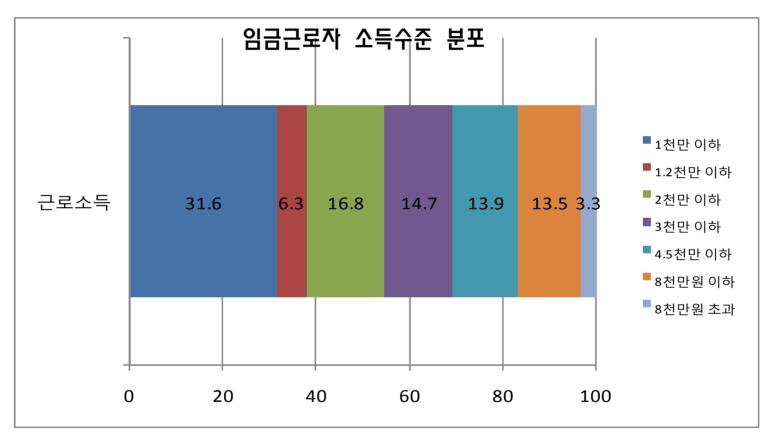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 재계산



#### 2. 한국의 노동시장과 근로자 지원제도 현황

### ■ 저임근로자 규모 증가



출처: 국세통계연보(2010).



#### 2. 한국의 노동시장과 근로자 지원제도 현황

### ■ 저임근로자 규모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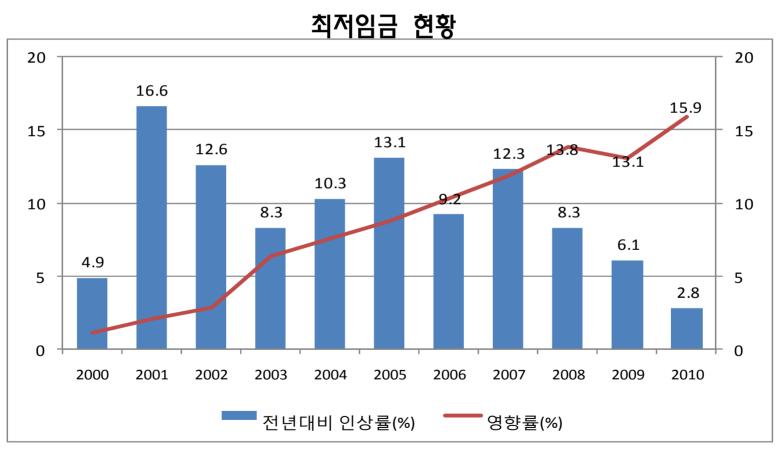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임금근로자	22.6	23.2	24.1	26.3	26.6	25.8	27.4	26.8	26.2	26.3
정규직	17.5	18.8	17.6	19.7	19.4	19.0	20.2	19.8	17.3	18.3
비정규직	36.3	34.9	37.7	37.5	39.1	38.3	40.2	40.6	42.7	42.3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매년 8월.

Lee,B.H. and D.Hwang, 2010, Low-paid work in Korea, national technical report prepared for the Global Wage Report. 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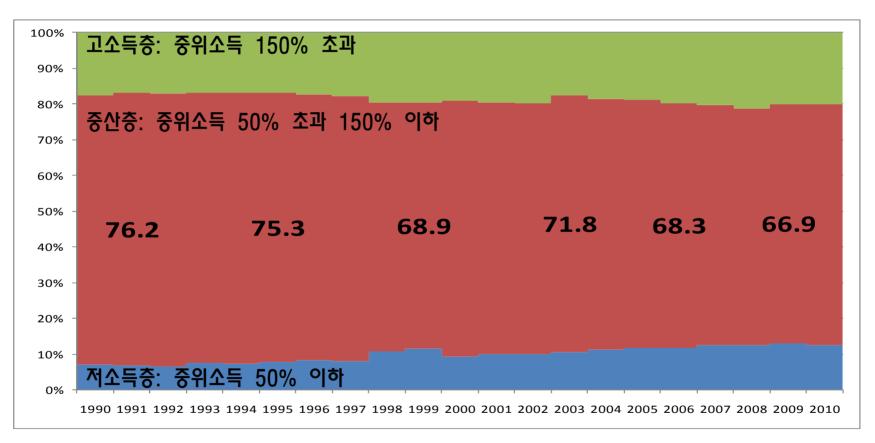
■ 저임근로자 규모 증가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임금실태조사보고서 KLI 한국노동연구원

#### 2. 한국의 노동시장과 근로자 지원제도 현황

### ■ 중산층의 지속적 감소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도시가구 2인 이상 자료를 이용하여 중산층이 다소 과대계산되었음.





- 현금지원제도
-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추정(2010.12 기준)

	국민연금 가	적 <mark>용제</mark> 의 1,100만명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	자	868만명	불완전취업자, 무급가족종사		
직역 연금 138 만명	962만명	납부자 227만명	장기 체납 141만 명	납부예외 500만명	자 등: 200만 명 -무급가족종사자 134명 -기타 66만명 비경제활동인구(군인,학생,주부 등): 900만 명 -군인 65만명 -무소득 배우자 553명 -재학생 231명 -재소자 6만명 등		
4.5 %	보험료납부 38.8%		미납	루 20.8%	적용제의 35.9%		



### ■ 현금지원제도

•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추정(2010.12 기준)

	고용보험 가입대상 1	적용제외 686만명	
직역	납부자 1,011만명		
연금 138 만명	-상시근로자 837만명 -일용근로자 174만명	548만명	비임금근로자(686만명) -자영업자 559만명 -무급가족종사자 127만명
5.8 %	보험료납부 42.4%	미납부 23.0%	적용제의 28.8%



### ■ 현금지원제도

• 산재보험 가입자 현황추정(2010.12 기준)

	산재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 1,673만명		!	적용제외	572만명
직역	당연적용 1,	임의가입	114만명			
- 연금 138 만명	보험료 납부자 1,351만명	미납부자 208만명	납부자 5만명	미납부자 109만명	비임금근로자(5 -자영업자 44 -무급가족종시	15만명
5.8 %	납부 60.2%	미납부 9.3%	납부 0.2%	미납부 4.8%	적용제외	25.5%



- 현금지원제도
- 근로장려세제

대상: 저소득 임금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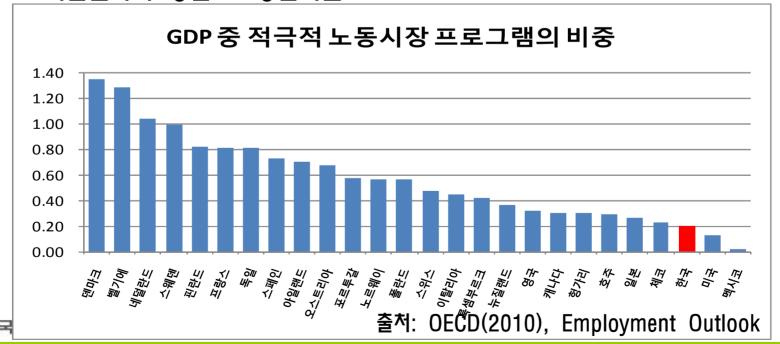
	수 급 조 건
소득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
부양자녀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주택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 미만 주택 소유
재산	주택 포함 재산합계액 1억원 미만

72만 3,937가구가 신청하여 59만 720가구(81.6%)에게 총 4,537억원 지급



- 현금지원제도
- 근로장려세제 수혜자 현황
  - 남성(60.8%), 무주택(79.4%), 부부세대(77.1%)
  - 30-40대가 대부분(85.2%)
  - 재산이 3천만원 미만(84.8%)
  - 총소득 1,200만원 미만(69.5%)
  - 일용직(45.2%) > 상용직(39.7%) > 중복(상용+일용)(15.1%)
  - 업종: 제조업(22.5%), 건설업(22.2%), 도소매업(14.6%)이 전체의 5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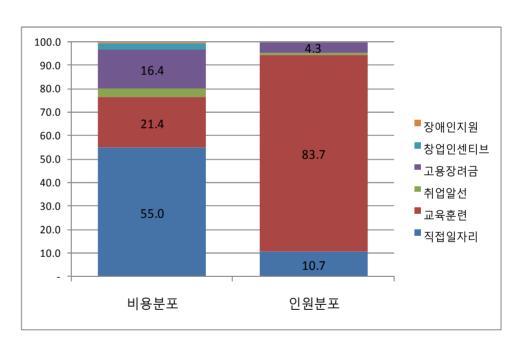
- 고용정책을 통한 보호
- 고용정책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구성: 고용서비스(취업알선) + 교육훈련 + 고용장려금 + 장애인 지원 + 직접일자리 창출 + 창업지원



#### 3. 취업자 보호제도 현황

- 고용정책을 통한 보호
- 한국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비용구성(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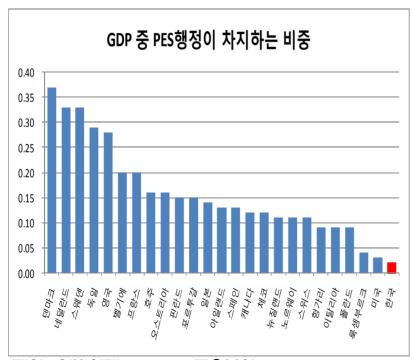
	금액(억원)	인원(명)
고용창출	29,574	575,405
교육훈련	11,479	4,505,942
취업알선	2,080	65,582
고용장려금	8,818	231,287
창업인센티브	1,386	6,128
장애인지원	416	346
총계	53,753	5,384,6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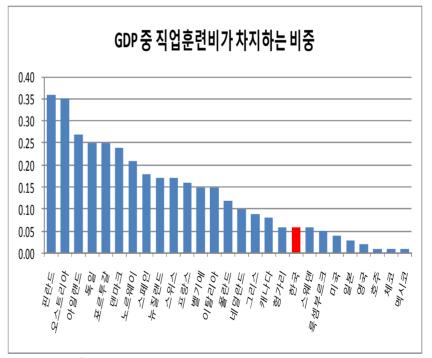
출처: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실적(내부자료)



- 고용정책을 통한 보호
- 공공 고용서비스의 비중이 매우 낮음.



재원: 일반회계 45.1%, 고용보험 5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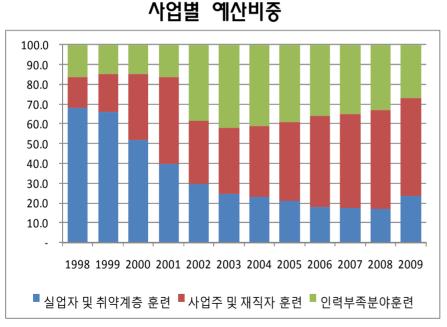
재원: 고용보험 83.8%, 일반회계 14.1%, 기타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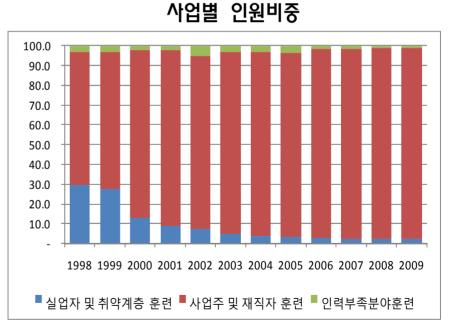
출처: OECD(2010), Employment Outlook



- 고용정책을 통한 보호
- 2009년 직업훈련 현황
  - 실업자 및 취약계층 훈련: 신규실업자훈련(새터민훈련 포함), 지역실업자훈련, 전직실업자훈련
  - 사업주 및 재직자 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유급휴가훈련, 근로자수강지원금, 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 중소기업훈련권소시엄,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사업, 중 소기업학습조직화사업,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 인력부족분약훈련: 우선선정직종훈련, 기능사양성훈련, 다기능기술자 등 훈련, 훈련교사양 성훈련

- 고용정책을 통한 보호
- 직업훈련의 구성
  - 전체 예산 중 사업주 및 재직자 훈련에 쓰는 비용은 49.5%(2009)
  -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 비용은 8%







출처: e-나라지표 www.index.go.kr

#### 3. 취업자 보호제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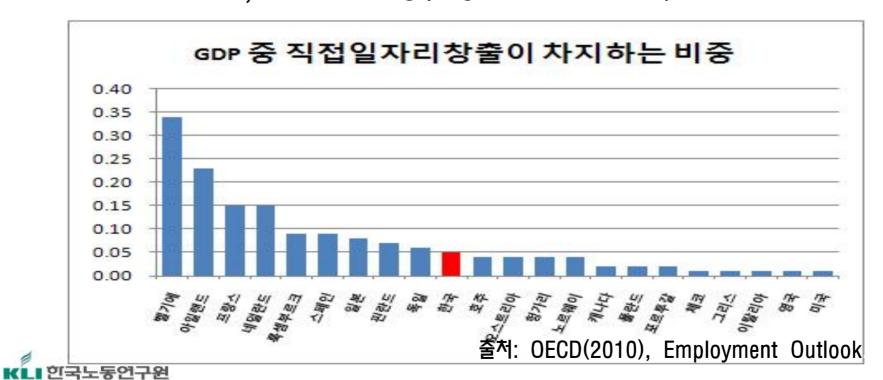
- 고용정책을 통한 보호
- 2009년 직업훈련 현황

	인원(천명)	예산(억원)	1인당 훈련비용(만원)
총계	5,403	15,115	28.0
실업자 및 취약계층 훈련	133	3,556	267.4
<b>사업주 및 재직자 훈련</b>	5,201	7,456	14.3
인력부족분약훈련	60	4,103	68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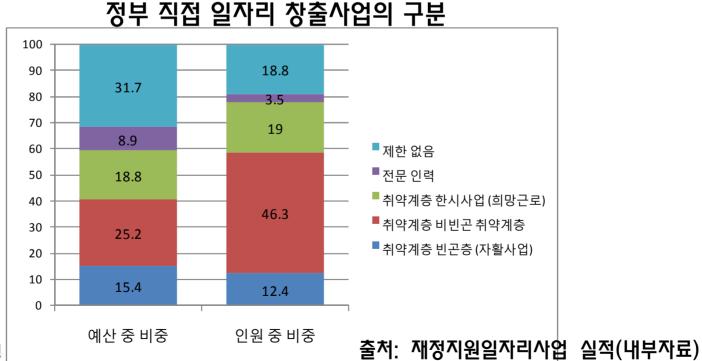
출처: e-나라지표 www.index.go.kr



- 고용정책을 통한 보호
-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재원: 일반회계, 기타 기금 등(고용보험 기금 없음.)



- 고용정책을 통한 보호
-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
  - 약 60%의 예산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사용
  - 빈곤층 대상 사업을 제외하면 취약계층의 비중은 10%-70%





일을 통한 복지 4. 발전방향

#### ■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망 확대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임		비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고용관계 자영업자 비		비공식부문	
	임시직	일용직	<기존 제도의 포괄범위 확대> -적용제외범위 축소			
<행정·시스템적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 행정지도 -정보행정 인프라 강화			-특수고용관계 근로자성 인정 확대 -자영업자 포괄(임의적용) <비임금근로자 축소>			
<금전적 지원> -저소득 근로자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지원			근로자성 인정 확대	자영업 확산 지양	← 공식화	

-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망 확대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 기존 제도의 포괄범위 확대

제도	개편방안
국민연금	적용제외 범위를 축소하고, 가입기간 연장에 주력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 추진 단기사병에 대하여 군복무기간 중 국민연금 적용 추진(크레딧에서 변경)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 허용
산재보험	보호의 범주를 비임금 근로자에게까지 점차 확대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에 대한 적용확대를 계속 추진 (간병인, 택배기사, 지방 퀵서비스 등)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를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추가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에 대한 적용확대 추진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 장기적으로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추진

일을 통한 복지

4. 발전방향

-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망 확대
-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내용
배경	<ul> <li>사회보험은 단일요율제도로서 저소득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 감소율이 더 높음</li> <li>사회보험 미가입 저소득 근로자는 소득중단 시 어려움이 더 크고, 빈곤층이 되면 국가의 부담도 증가(※2010년 65세 이상 11.0%, 노령빈곤율 47%, 노인단독가구 빈곤율 70% 이상, 2030년 65세 이상 24.3%)</li> <li>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보험에 가입시킴으로써, 이후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킴</li> </ul>
지원방식	- 일정소득 미만(최저임금의 1.3배)의 전일제 임금근로자와 사업주 -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료의 일부(50-80%) 지원
효과	-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 전일제 임금근로를 장려해서 노동시장 구조 개선

-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망 확대
- ✓ 비임금 근로자 축소
  -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성 검토
    - : 새롭게 나타나는 고용형태에 대한 근로자성 검토를 통해서 적절한 보호방식 결정
  - 자영업확산 지양
    - : 청년, 중년 등은 아이디어 발전을 통한 창업을 장려 생계형 자영업자가 휴폐업하거나 중고령 취업취약계층이 구직활동할 때
      - · 임금근로자가 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실시
      - ·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어려울 경우, 사회적 일자리 혹은 사회적 기업 등 취업을 유도
  - 비공식부문 축소
    - :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일자리,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등을 통하여 그간 비공식 부문에 있었던 가사·간병 등 서비스 노동의 공식화 유도

일을 통한 복지

4. 발전방향

-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망 확대
- 새로운 제도를 도입,확충하여 사회안전망 확대
- ✓ 실업부조제도 도입
  - 실업자 중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실업부조를 제 공하고, 이들에 대해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실시
  -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과 청년층 및 취약계층 대상 직업훈련 예산 중 일부를 재편성하여 재원마련
  - 사회적 합의와 재원의 규모에 따라서 청년실업자, 중고령의 장기실업자 등에게 먼저 실시하는 방안 고려

-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망 확대
- 새로운 제도를 도입,확충하여 사회안전망 확대
- ✓ 저소득층 대상 공익형 보험 신설 검토
  - 생애주기에 따라 교육·상해·연금 등 민영보험 상품에 저소득층, 장애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 개발
  - 보험, 금융사의 사회적 공헌, 민간기부 등을 연계하여 보험료 등을 감면하고, 세제지원 등 추진
-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 차상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의료비(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저리 대출제도 검토
  - 일시적인 고액 진료비 부담에 따른 위기시 긴급의료비 지원 확대 (입원수술비 및 관련 외래비용 중 본인부담금(비급역 포함) 1회 300만원 이내, 불가피 한 경우 300만원 이내 1회 연장)

일을 통한 복지 4. 발전방향

#### ■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괜찮은 일자리 제공

- ✓ 저숙련 계층에 대한 취업알선 강화
  - . 중소기업과의 매칭 기회를 더 많이 제공
  - . 사회적 기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과 연계하여 간병.보육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공공취업알선 확대
  - .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교육훈련 체계화, 자격제도 도입 등 일자리 품질제고 추진
- ✓ 취업 애로요인 해소 후, 취업기회 제공
  - . 적절한 기술훈련과 취업알선을 순차적으로 제공
  - . 경과적 일자리로서의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 수립
  - . 육아, 간병 등 사회서비스와 연계 후, 취업알선
- ✓ 청년실업자에 대한 다양한 취업경로 모색
- ✓ 퇴직연령자에 대한 적절한 취업처 모색

KLI한국노동연구원

일을 통한 복지 4. 발전방향

#### ■ 일하는 사람의 삶의 질 향상

- ✓ 교육훈련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원
  - . 재직자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향상훈련기회 확대
  - .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교육훈련 체계화, 자격제도 도입 등 일자리 품질제고 추진
  - .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단기훈련과정을 개발하여 취업능력 향상
  - . 교육훈련휴가 확대 추진
  - . 빈곤층,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직업교육 강화
- ✓ 근로장려세제 내실화 및 확대로 생활안정 도모
  - .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위한 소득파악 제고
  - . 근로장려세제 자영업자 지원 조기실시 적극 고려
- ✓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 감사합니다



2011. 4. 13

기초보장연구실 김태완



## 목차

- **I** 들어가며
- II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현황 및 문제점
- 사회안전망 내실화 방안
- ₩ 결론









## 들어가며



#### 우리나라는 2000년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갖추어 나감

- 전체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2000), 국민연금의 전국민화(1999), 건강보험(보장성) 및 고용보험의 확대, 긴급지원제도의 도입(200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2008) 등을 들 수 있음
- 대상별로는 기초노령연금 도입(2008), 장애인연금제도(2010), 근로장려세제(2008) 제도의 도입 등이 이루어짐

#### 2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는 과거에 비해 2000년대 들어 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음

복지지출에 대한 비중은 정부예산 대비 1995년 18.3%에서 2004년 24.5%, 2009년 26.2%, 2011년 28.0%까지 증가함

#### 들어가며



-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복지지출의 증가가 이루어졌지만, 각 사회보장제도가 지니고 있는 선정기준, 급여기준 등으로 인해
  -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증가한 지출에 비해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는 매우 낮은 실정임

- 4 여기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문이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함
  - 1, 2차 사회안전망인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1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2000년에 도입된 공공부조제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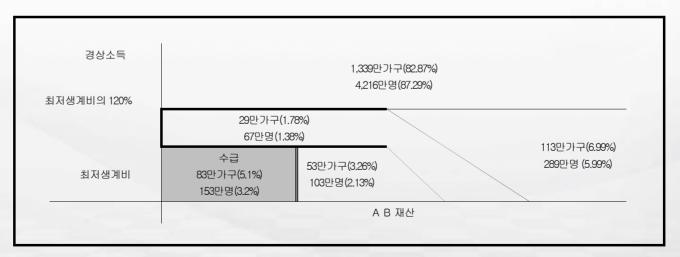
- 기존 생활보호제도와 달리 인구학적 및 연령기준 등을 폐지하고 수급자 및 수급가구로 선정되면, 정부가 제공하는 급여(생계, 주거, 의료 등 7종) 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됨
- 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매년 발표하고
   3년마다 최저생계비 수준을 계측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실질적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
- 기초보장제도의 급여는 보충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음



2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기준을 초과해야 하는데, 동 기준으로 인해 기초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2007년 차상위실태조사를 기초로 할 경우 최저생계비가 소득인정액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규모가 약 103만명인 것으로 추계됨



자료: 이현주 외(2008)



3

# 근로유인 동기 약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기초보장제도의 수급층으로 남고자 하는 가구들이 나타나고 있음

● 수급자들의 수급보장기간 변화를 보면 2009년 기준으로 8~10년 미만의 수급이 지속된 가구들이 약 30만가구로 전체 대상가구의 34.2%에 이르고 있음

〈표〉수급가구 보장기간별 현황(가구유형별)

(단위: 가구)

세대구분	계	1년	1~2년	2~3년	3~4년	4~5년	5~6년	6~8년	8~10년	10년
		미만	이상							
2001	698,075	86,151	586,445	16,918	4,450	1,175	695	864	454	923
2002	691,018	69,354	77,714	521,540	14,579	3,907	1,104	987	741	1,092
2003	717,861	92,058	65,645	69,646	471,775	11,797	3,507	1,531	712	1,190
2004	753,681	96,808	84,074	61,054	63,249	431,415	10,746	4,089	763	1,483
2005	809,745	114,195	90,086	77,558	56,965	57,817	396,349	13,682	1,366	1,727
2006	831,692	158,860	173,366	126,152	66,574	46,884	43,586	214,928	1,001	341
2007	852,420	92,882	96,025	96,407	79,073	66,756	46,060	367,924	6,603	690
2008	854,205	75,253	88,411	85,224	86,136	70,751	59,781	83,312	291,932	13,405
2009	882,925	94,064	75,460	80,701	78,455	79,547	65,640	93,843	302,403	12,812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각년도..



4

대상을 기준으로 또 다른 공공부조제도인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경우 2008년에 도입되어 65세 이상 노인계층의 70%에게 연 금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정부가 노인계층들의 사회발전에 대한 기여와 공적부양의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라 볼 수 있음
- 그러나 급여수준이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수준도 높지 않아 노인들의 생활개선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
- 저소득 노인계층에게는 일정부문 생활비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대다수의 노인계층에게는 용돈수준에 불과해 정부지출대비 노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나.사회보험제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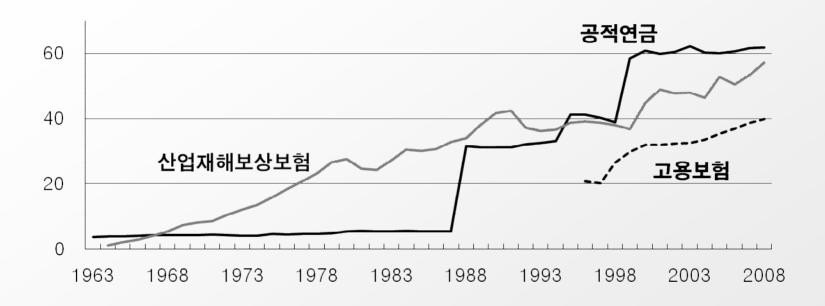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근로 및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확대되면서 외형상의 모습은 잘 갖추어져 있음

- (국민연금) '88 10인 이상 사업장 => ' 95 농어촌지역 => '99 도시지역 => '06 1인 이상 사업장 (건강보험) '77 500인 이상 사업장 => '79 공무원.교원 => '88 농어촌지역 => '89 도시지역 => '00 1인 이상 사업장
- (산재보험) '64 500인 이상 광공업 => '00 1인 이상 사업장
   (고용보험) '95 30인 이상 사업장 => '98 1인 이상 사업장
- 그러나 사회보험제도가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제도가 구성됨으로써 2000년대 이후 나타난 다양한 근로형태(시간제, 비정규직, 특수형태 근로자 등) 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님

## 나.사회보험제도



< 근로자 대상 사회보험제도의 가입률(전체 근로자 대비, %) >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가입률은 약 60%, 고용보험의 가입률은 약 40%에 불과함

#### 나.사회보험제도



2

2000년대 초반의 경제위기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위기였다면, 2008년 말 세계적 금융위기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많은 피해를 입음

 이들은 언제든 실업·폐업 등의 위기에 노출될 경우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음

3

불안정 노동시장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이들 계층의 삶의 질을 낮추게 되고 빈곤 및 양극화의 문제를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유발하고 있음









1

기초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임에도 선정기준으로 인해 비수급빈곤층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계층을 보호 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이미 두차례에 걸쳐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였지만, 앞에서 살펴본것과 같이, 광범위한 사각지대(대부분 독거노인, 조손가구, 한부 모가구 등)가 존재하고 있음
- 기초보장제도 급여체계는 보충성의 원칙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낮추고 수급자로 머무르게 되는 문제를 지니고 있어 이를 완화하면서 보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강구되어야 만 함
- 위와 같은 측면에서 기초보장제도의 개선은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함

## 1) 단기적 개선방안



#### 선정기준의 완화(부양의무자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기준 합리화)기초보장제도의 비수급 빈곤층 보호강화를 위해 현행 부양의무자기준을 대폭 완화
  - ⇒ 현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 최저생계비 합의 130% 기준을, 4인가구 중위소득수준(최저생계비 185%수준, 256만원 → 364만원)로 상향조정하여, 비수급 빈곤층의 사각지대 해소
  - ⇒ (완화방안)
    - 1. 4인가구 중위소득수준 이하 전체가구에 적용(약 8.5천명)
    - 2. 4인가구 중위소득수준 이하 가구중 근로무능력가구(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에만 적용(약 6.1천명)
- 2000년 제도 도입이후 변경된 적이 없는 재산의 소득환산제도의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완화(현행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15%, 자동차 100%)
  - ➡ 현행 일반재산 월4.17%, 금융재산 월6.15%, 자동차 100% 기준을 완화

## 1) 단기적 개선방안



#### 근로가능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강화

-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자활지원제도, 근로장려금제도 등을 두고 있음 (2011년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행급여를 도입)
  - ➡ 기초보장제도가 자활촉진을 위한 근로장려금제도는, 제도 대상범위와 공제 수준이 낮아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함
- ◎ (취업수급자 소득공제제도 도입)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 근로소득공제제도를 도입
  - → 수급자들의 탈수급을 촉진하고 제도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취업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행급여제도 도입
- (탈수급자 이행급여 도입)탈수급을 한 수급자 및 그 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이행급여(의료, 주거 및 교육급여 제공)를 확대하여 단기간 보호를 강화

## 1) 단기적 개선방안



#### 차상위계층 지원 체계 구축 등

- (차상위계층 지원체계 구축)부처간 다원화 되어 있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별도의 자격확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 및 관리를 표준화, 체계화
  - ⇒ 차상위계층의 정의, 범위, 선정기준, 급여, 전달체계 및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는 가칭 "차상위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검토
-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차상위 위기가구에 대한 한시적 지원을 통한 빈곤진입예방을 위해 긴급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방식 개선 추진
  - ⇒ 휴폐업 영세자영업자, 신고, 파산, 출소자 등을 위기사유로 추가, 금융 재산 기준 상향 등

## 2) 장기적 개선방안



#### 상대적 빈곤선 도입 검토

- 현 최저생계비는 매 3년마다 계측년도(전물량방식)를 두고 물가의 변화와 생활의 질의 변화를 함께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저생계비 수준과 포함 되는 품목과 수량 등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들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전물량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이 10년이 넘었으며, 최저생계비 수준 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을 통한 상대적 빈곤선 도입이 필요함
- 전물량방식에서 상대적 방식으로의 이행이 어려울 경우 반물량방식을 통해 최저생계비가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욕구별 급여체계 도입

- 현 급여체계가 수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한 번 수급자는 계속해서 수급상 태로, 수급을 벗어나도 다시 수급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욕구가 지속적으로 발생
- 장기적으로 탈빈곤을 강화하고 소득과 욕구에 맞는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욕구별 급여체계로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향후 동 제도 도입을 위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엄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기초보장제도와의 조화속에 욕구별 급여체계에 대한 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나. 사회보험제도



#### 1

#### 사회보험제도별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완화

- 국민연금 적용제외제도를 축소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
  - → 임의가입제도(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무소득배우자, 학생 등이 쉽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
- 산재보험 미적용 취업자 대상 적용확대(특수형태업무 종사자 (간병인, 택배기사, 지방 퀵서비스 등)에 대한 적용확대 계속 추진)
  - ➡ 특수형태 업무종사자 중 업무의 사용연속성이 큰 업종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
-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에 대한 적용확대
  - →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

## 나. 사회보험제도



## 2

#### 표적집단에 대한 원조를 통한 적용범위 확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취업수급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취업수급자(약 12.7천명)를 사회보험에 적용시키고,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부담
  - → 임금근로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유도 비임금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지원
- 저임금근로자 대상 사회보험료 경감 방안 검토
  - → 기초수급자 등 빈곤층의 근로유인 및 소득보전, 기업의 노동수요 확대 및 비공식 노동의 공식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경감검토 (OECD 고용전략 권고 정책)

## 나. 사회보험제도



3

####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정보.행정 인프라 구축

- 국세청과 각 사회보험 공단 간 정보연계 강화
  - → 2014년 근로장려세제가 자영사업자에게 확대예정 되어 있음
  - → 자영사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전제되므로 국세청과 각 사회보험 공단간 전산망, 자료 접근성 확보 등이 필요
    - ※특히 자료연계시 시차발생과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정보공유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완화에 기여할 것임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사회 보장제도를 확충과 더불어,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음

-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현 정부의 능동적 복지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더불어 워크페어(Workfare)를 함께 강조함
- 그러나 사각제도의 계속적 존재, 국민들의 복지체감도가 낮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2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제도에서 향후 지향해야 할 정책들

- 우선적으로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최저생계비 계측방식과 욕구별 급여체계 도입을 통해 저소득층의 보장성 강화 및 욕구에 맞는 지원체계구축
- 사회보험 가입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함

#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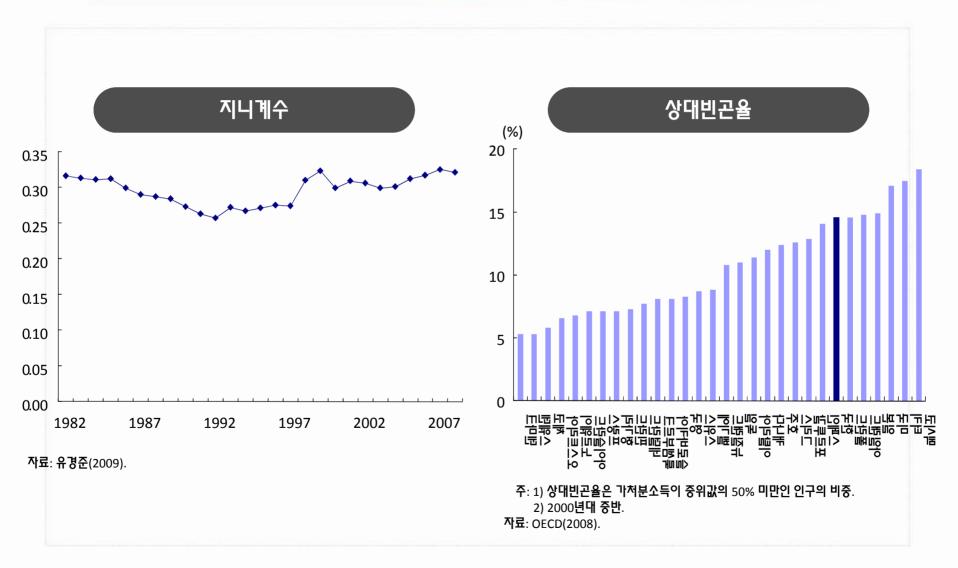
2011. 4. 13



# 분배와 빈곤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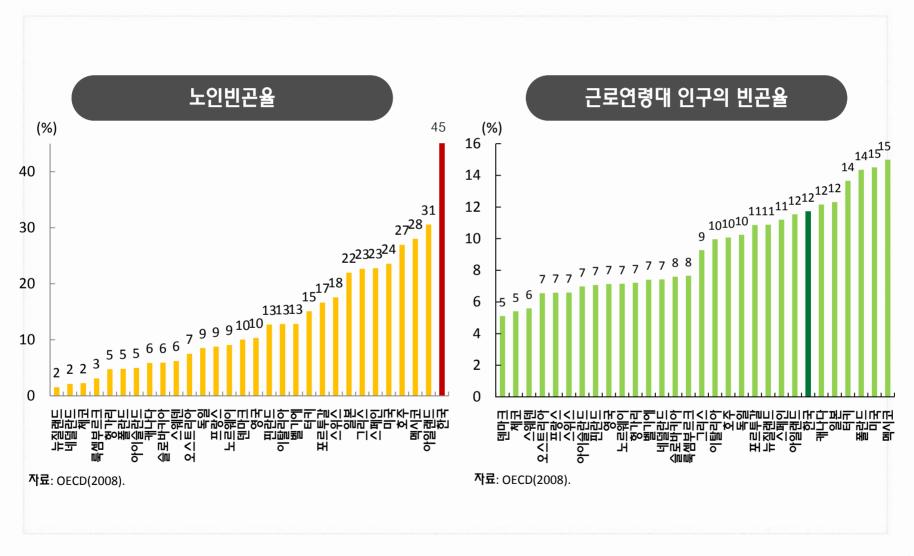
# 1990년대 초 이래 분배악화, 빈곤심화





# 특히 노인빈곤과 근로연령대 빈곤이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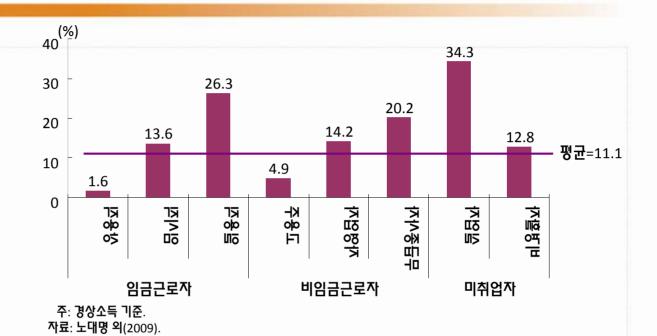




# 실업자, 일용직 등을 중심으로 근로연령대 빈곤 증가



■ 18~64**세** 근로능력자 중 종사상지위별 집단의 빈곤발생률



■ 빈곤율의 요인분해

	구성비(%)		빈곤율(%)		요인분해(%p)			
	1997	2008	1997	2008	정화 구효	빈곤율 효과	오차	합계
근로연령 가구주	98.8	96.6	8.48	10.92	-0.19	2.41	-0.05	2.17
노인가구주	1.2	3.4	24.73	41.16	0.55	0.19	0.36	1.10
전체	100.0	100.0	8.67	11.94	0.36	2.61	0.31	3.27

주: 시장소득 기준,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자료: 이병희(2010).

# 저임금 근로자는 영세기업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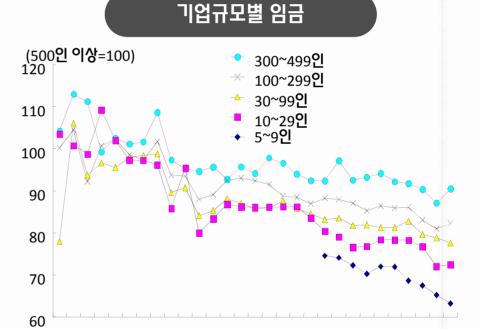


#### 기업규모별 저임금 근로자 비율

	남성	여성
1~4인	18.8	39.1
5~9 <b>인</b>	7.5	22.5
10~29 <b>인</b>	5.2	18.9
30~49 <b>인</b>	3.5	14.1
50~99 <b>인</b>	3.3	12.8
100~299인	2.3	11.6
300~499 <b>인</b>	1.8	9.9
500~999 <b>인</b>	1.8	9.5
1,000인 이상	0.7	4.0

주: 1) 저임금은 중위 임금의 50% 이하로 정의. 2) 2006년.

자료: 김영미(2009).



1995

2000

2005

1980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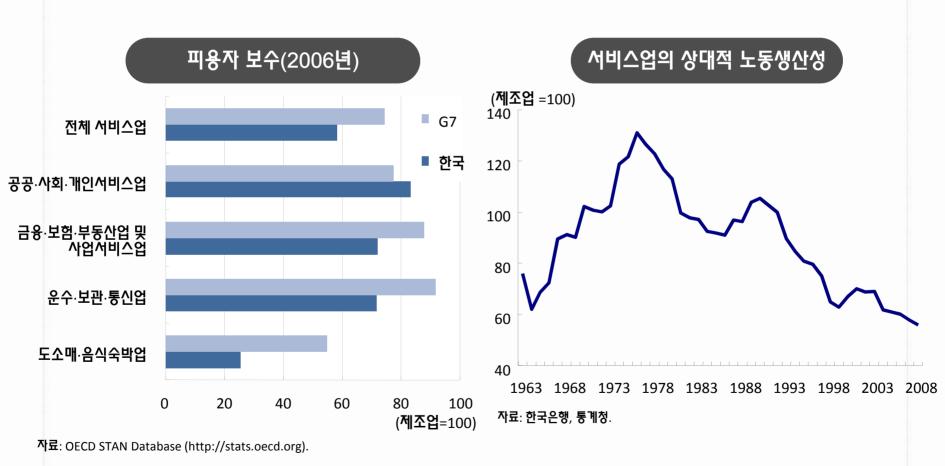
1985

1990

#### 서비스업의 생산성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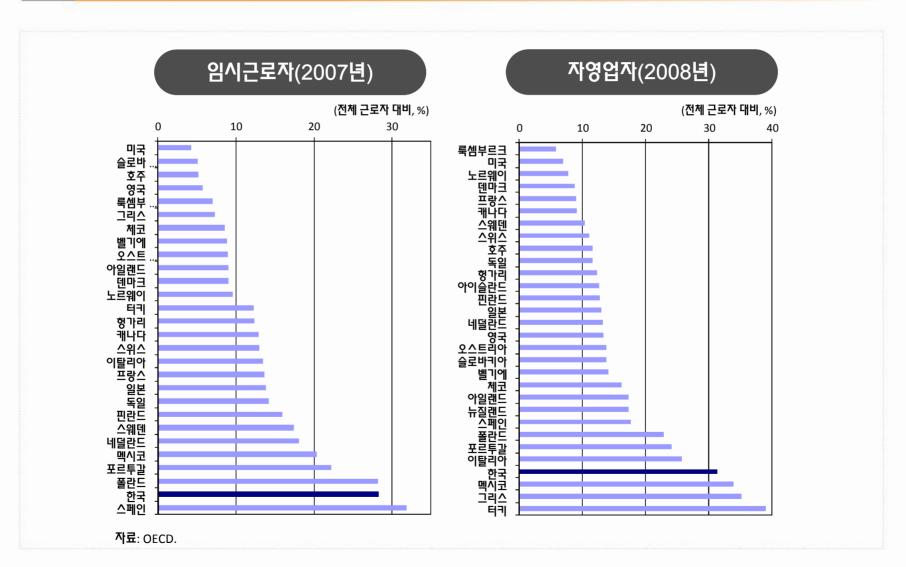






# 높은 수준의 비(非)상용근로자 비중





# 사회안전망의 현황

### 사회보험 가입률 저조



#### 근로자 대상 사회보험제도의 가입률

#### (전체 근로자 대비, %)



1963 1968 1973 1978 1983 1988 1993 1998 2003 2008

주: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포함.

자료: 각 사회보험 관리공단, 통계청.

#### 임금근로자의 직장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전체	사업장 규모별(인)			
		L'A	1~9	10~99	100~	
모두 가입		64.5	39.2	73.5	92.1	
2개 가입	연금, 건강	1.6	1.3	1.6	2.0	
	연금, 고용	0.4	0.3	0.5	0.2	
	건강, 고용	1.7	1.6	2.2	0.6	
1개 가입	연금	0.1	0.3	0.0	0.0	
	건강	0.5	0.7	0.3	0.2	
	고 <del>용</del>	1.1	1.2	1.5	0.3	
모두 미기입		30.1	55.5	20.3	4.6	
계		100.0	100.0	100.0	100.0	

주: 1) 2010년 3월 현재.

2) 사업장 규모별 근로자수 는 1~9인 37%, 10~99인 43%, 100인 이상 20%. 자료: 이병희(2010).

# 공공부조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광범위한 비수급 빈곤층
  -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재산기준
- 근로동기 저하
  - 통합급여 및 보충급여 형태의 급여제도
  - 자활사업의 한계

#### ■ 사회서비스

-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사업 시행
  - 주거, 보육, 교육, 의료, 식품, 에너지, 정보·통신, 문화·체육, 취업·창업 등
- 기초보장 수급자에게 집중되어 근로동기 저하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경향

#### 비효율적 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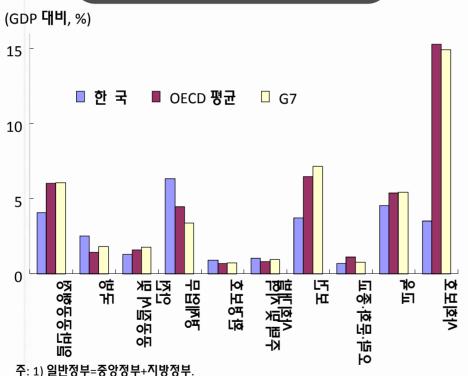


- 복잡다기한 복지사업
  - 다수의 부처가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다수의 사업 추진
-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
  - 지방정부, 자활센터, 고용센터 등 서비스공급자 간 업무협조 불충분
- 지방정부의 유인 부족
  -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 부족
    - 납세자 이동성(tax payer mobility)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
  -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기획, 물량배정, 지방비 분담 요구
-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부족
  -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지방정부의 배려 부족

# 아직 복지지출이 낮은 수준이나, 향후 급증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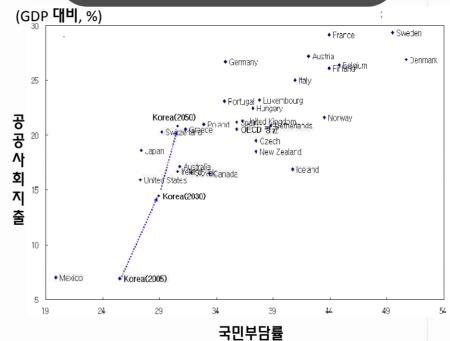
#### 일반정부 분약별 지출(2007년)



2) 캐나다는 2006년, 덴마크 및 룩셈부르크는 2008년.

자료: OECD.

#### OECD 공공사회지출 및 국민부담률 추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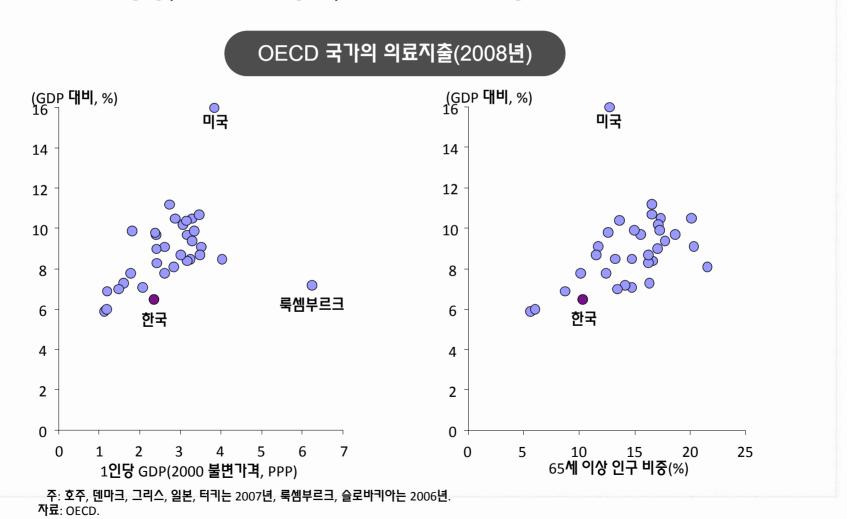


주: 한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의 자료는 2005년. 자료: 박형수·전병목(2009).

# 특히 의료 관련 지출이 급증할 전망



#### ■ 소득수준 향상, 노인인구 증가, 의료기술 발전 등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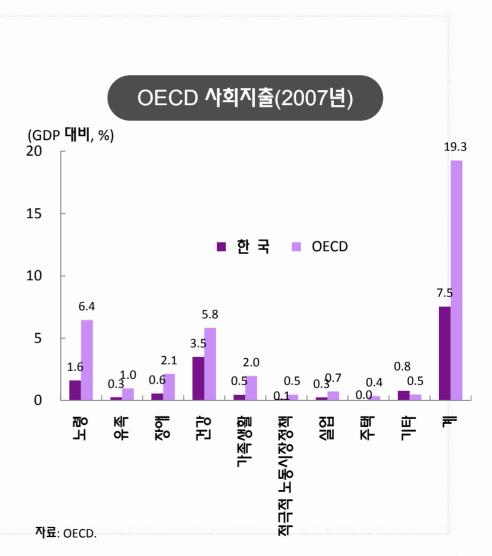
#### 복지지출의 국제비교



■ 노령·유족·장에 및 건강: 고령인구 비율과 소득수준이 낮고, 국민연금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에 기인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실업: 근로활성화(activation)의 관점에서 확대될 필요

■ 기타: 사회보험제도의 역할이 제한된 상황에서 기초보장제도 등 공공부조의 역할이 큼을 반영



# 선진국의 동향

#### 1990년대 이후 복지개혁 본격화



- 근로연계복지(workfare) 및 근로활성화(activation) 확대
  - 수급자의 근로의무 강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EITC 확대
- 연금, 의료 등에 있어 개인책임 강화
-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어 시장형 기제(market-type mechanism) 도입
  - 바우처 도입, 민간위탁 확대, 공공과 민간 공급자 사이의 경쟁체제 구축
-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칙에 대한 인식 변화
  - 복지지출은 단선적으로 계속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여건에 따라 축소될수도 있다는 사실이 명확화
  - 복지혜택은 불가침의 사회권(social right)이 아니라 납세자와 수혜자 간의 교섭을 통해 확보되는 권리로 전환

### 앞으로 복지개혁은 가속화될 전망



-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재정긴축 추진
  - 금융위기로부터 큰 타격을 입은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등은 극단적 재정 간축 단행
- 장기적으로는 어느 나라든 고령화로 심각한 재정위험에 노출
  - IMF(2009)는 고령화로 인해 G20 국가의 정부부채가 2050년경 GDP의 300%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금까지는 각종 이해집단의 반발로 근본적 복지개혁이 어려웠지만, 앞으로 복지개혁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전망
    - 예: 독일은 2000년대 중 구조개혁(Hartz reform) 추진, 성장부진 탈출

# 사회안전망 강화의 방향

# 경제성장 촉진



- 경제정책에 있어 엄격한 경쟁원리를 적용하여 경제성장 촉진
  - 예: 북유럽 국가의 경제정책은 일정 부분 우리보다 더 시장친화적
- 이를 통해 복지국가의 물적 기반 확보
- 동시에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 복지국가 유형별 주요 지표

(단위: %)

	OECD	고용률이 높	은 국가유형	고용률이 낮은 국가유형		
지 표	단순평균	영미형1)	<b>북유럽형</b> 2)	대륙 및 남유럽형 <sup>3)</sup>	동유럽형4)	
고용보호지수10)	2.01	1.38	2.13	2.71	1.83	
<b>실업급여의 수준</b> 5)	27.81	18.23	39.86	36.17	9.69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sup>6)</sup>	29.25	15.76	64.14	25.84	3.46	
조세격자(tax wedge)7)	27.10	18.54	27.42	34.33	32.43	
노동조합 적용률	59.96	30.75	83.33	82.57	38.33	
상품시장규제지수 <sup>10)</sup>	1.42	1.20	1.28	1.55	1.97	
고 용 률	67.11	70.92	71.91	62.54	58.00	
실 업 률	7.47	5.30	4.79	8.97	15.12	
<b>지니계수</b> <sup>8)</sup>	29.35	31.50	25.58	29.85	31.35	
상대적 빈곤율 <sup>9)</sup>	9.64	11.78	7.77	9.86	7.05	

- 주: 1)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뉴질랜드, 스위스, 영국, 미국.
  - 2)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 3)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 4)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 5) 두 가지 소득수준(제조업 평균임금의 100% 및 67%)과 세 가지 가족유형(독신, 피부양 배우자, 근로 배우자)에 대한 5년의 실업기간 중 소득대체율의 평균.
  - 6) 1인당 GDP 대비 실업자 1인당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의 비율.
  - 7) 고용주가 부담하는 고용비용과 근로자(임금이 제조업 평균임금의 100%에 해당하며 피부양 배우자 및 2명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의 순임금소득 사이의 차이.
  - 8) 총인구에 대한 지니계수. 한국 및 슬로바키아는 자료가 없음.
  - 9) 경상중위소득의 50% 미만의 소득을 가지는 인구의 비율. 한국 및 슬로바키아는 자료가 없음.
- 10) 우리나라의 2008년 고용보호지수는 2.13, 상품시장규제지수는 1.47.

자료: OECD(2006).

#### 근로활성화 본격 시행



####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 직업훈련(실업자 훈련 및 재직자 훈련), 사회적 일자리, 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등 강화
  - 고용보조금은 사중손실, 대체효과, 전치효과 등으로 인해 효과성이 낮으므로 축소
  - 자활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간의 역할분담 재정립 또는 통합
- 공공직업안정기관(public employment service: PES)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여 사례관리 강화

#### ■ 근로유인 강화

- 근로장려세제(EITC)의 적용대상 확대 및 급여 증대
- 기초보장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및 EITC 적용 검토
- 근로능력 판정체계 개편

#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확보



-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노령연금의 보완적 역할 확립
  - 선택과 집중의 원칙 강화, 저소득 노인에게는 보다 많은 급여를 제공
- 기초보장제도 개편
  -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재산기준 완화
  - 욕구별 급여체계 도입
  - 노인 ·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와 그 외의 근로능력자를 구분
    - 근로능력자에게 욕구별 급여 적용,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 사회보험 강화
  -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 개인부담 완화

####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 연금, 의료 등 대규모 지출증가가 요구되는 사회보험제도의 개편
  - 공적연금: 직역연금에 대한 주기적 재정 재계산제도 도입, 보험료 인상 등 재정안정화방안 마련
    - 장기적으로는 거시경제 및 인구구조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도입 (예: 스웨덴의 NDC제도)
  -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 약가제도 개선, 지출구조 개선, 장기재정추계제도 도입 등
    - 국고지원 확대보다는 보험료 인상으로 비용을 충당
- 재정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복지지출 증대에 대응
  - 경제사업 비중 축소, 엄격한 사전 타당성제도 도입, 대규모 지출사업의 주기적 분석 및 평가체제 도입 등
  - 경제성장은 재정투자보다 경쟁정책 강화, 대외개방 확대, 분약별 구조개혁을 통해 도모

#### 여타 분야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



#### ■ 거시경제의 안정

- 거시경제의 불안정은 특히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작용
-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보수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
- 금융감독 역시 보다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집행
- 재정건전성 확보
- 환율의 신축성 제고
  - 고환율 정책은 수출부문과 내수부문 사이의 괴리를 확대시키는 경향

#### 

-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
   예: 규제개혁, 대외개방, 경쟁정책,
   노동시장 유연화)은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빈곤해소에 기여
- 물론 구조개혁의 결과 시장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빈곤에 빠질 수 있으나,
- 이것이 두려워 구조개혁을 늦추는 것보다는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 KDIKDIKDIKDI KDIKDIKDIKDI KDIKDIKDIKDI

